

제41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7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상정된 안건

- | | |
|---|---|
| 1.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1 |
|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1 |
|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 1 |
| 4.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 1 |

(19시21분 개의)

○소위원장 강선우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은 장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간호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간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소위 심사 참고자료 25쪽, 지난 2차 소위 때 주요 논의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 이어서 2차 소위에서는 1차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해서 쭉 끝까지 축조심사를 마무리하셨고요. 그리고 진료지원업무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셨습니다. 진료지원업무 조항을 따로 두지 말고 간호사 업무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의료기사 등 업무를 제외하여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간호사 업무 조항에서 규정하며 요건·교육과정·평가 등은 법률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난번의 논의를 이어 와서 쟁점 몇 가지만 빼고 다른 조항들은 저희는……

○**남인순 위원** 잘 안 들려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다른 쟁점조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하시고 오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 쟁점사항이 어떻게 수렴이 됐는지 지난번 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리를 해 오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조문대비표로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그때 수석전문위원은 수용을 해서 1항, 2항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건 1항하고 2항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의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2항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서 2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삭제를 하고 1항의 내용으로 이렇게 대안 정리한 거를 의결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학력과 관련되는 조항은 조금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조,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12조의 간호사의 업무에 별도로 2항과 3항 이렇게 두는 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한 거는 2항 내용은 거의 그대로 가고요, 3항에서 저희가 ‘행위로 의료기사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채혈 같은 것들이, 중복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안대로 가게 되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원안과 그다음에 저희가 수정대안 드린 거를 조금 더 조율을 해서 1항 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는 그런 안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4조에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이라고 해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요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고 이 조항도 2항에서부터 3항, 4항에 저희가 수정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2항으로 축약을 해서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교육과정 운영 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김미애 위원** 차관님,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왜 그래요. 좀 크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잘 안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2항으로 통합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계속 질의 이어 가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쟁점되는 거 전부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쟁점은 거의 많이 정리됐다고 보고 조문 축조심의가 필요하면 빨리하면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백혜련 위원** 파란색으로 지금, 한마디로 수정대안으로 이렇게……

○**김미애 위원** 노랑 음영에 파랑 글씨 된 거 이것만 가지고……

○**백혜련 위원** 예, 그거 가지고 문제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안상훈 위원** 동의합니다.

○**최보윤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여기 제3조부터 하나씩 빠르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남인순 위원** 정부가 수정한 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다음 5페이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그 부분도 정부가 조정한 안을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떤가요? 아까 의견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냥 여기서 토론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전 의견 수렴을 다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리면 정부가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한 게 있습니까?

○**남인순 위원** 아니, 민주당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조율한 거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이거는, 지난번 21대 때에도 이 부분이 첨예한 쟁점이었고 또 계속했는데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이미 들으셨겠지만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하고 민주당

강선우 간사님하고 셋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되면 마지막 간호조무사 규정은 우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우리 당에서 이거는 결단할 문제다. 그래서 이거 다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남겨 주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강선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복지부가 아까 구두로 읽으신 대안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 아까 설명하신 그 대안……

○김미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읽으셨는데, 지난번 소위 때 3항 심사하기로는 지금 강선우 안대로 하면 채혈 같은 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의료기사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좋겠다고 했었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어제 아침에 양당 간사랑 위원장님하고 논의할 때도 이 부분은 대충 수긍이 됐었고 다만 8개 의료기사 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 좀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소위원장 강선우 앞에 부분은 아니고요, 뒤에 부분 의료기사 단체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던 건 맞지요.

○김미애 위원 저는 앞에 부분도 맞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좀 다르네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위를 한다고 하니 많은 병원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이 원안대로 갈 경우에 생길 현장 혼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채혈 같은 거는 동네병원에서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좀 입법을 하면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지, 그 혼란이 없도록 하는 거여야 되는데 차관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좀 정리된 거를 우리에게 배포를 해 주시든지 뭐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가 지난 소위 때 제시했던 ‘의료기사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고요. 단체 간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안 원안대로 갈 경우에는 현장의 혼란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견이 되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제가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정대안입니다. ‘3항.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이렇

게 해서 강선우 의원안에 내신 그 조문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후단에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협장에서의 혼란을 하위 법령에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재수정안을 제안을 했고 이렇게 협의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구두로 읽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조항은 21대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 조항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던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기사들의 어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사실 의료기사와 관련한 그 내용에 있지만 그쪽 의료기사 단체들이 상당히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넣어 주되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업무 범위를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때 의료기사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제외하는 이 조항이 없어서 반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힘은 동의를 하셔 가지고 반대를 엄청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다 결자해지를 하는 상황이니까, 22대에 와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단체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또 정부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거로 단서조항을 달았으니까…… 이걸 또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꽉 나옵니다.

○김미애 위원 아이, 토론할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협장 혼란이 최소화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저……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저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게 협장 혼란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 업무 영역 자체가 의사 쪽으로든 의료기사 쪽으로든 명확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할 수 없어서 처음에 반대를 했던 건데 그걸 하위법으로 내려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해결이 된다는 게 저는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올라오고 나서 빅5 병원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빅5 병원 병원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병원간호사협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업무 범위라는 게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빨리 뭔가 대체인력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으로써 다른 직역까지 지금 다 견드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의료기사들이 단독 업무니까 이건 우리 영역이다 하고 권리 요구하면 그거 정확하게 어떻게 무 자르듯이 베실 거며 간호사들이 이거는 독립된 영역이니까 못 하겠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며……

그리고 지금 이거 대학병원 인력 충원 못 합니다. 채혈뿐만이 아니라 채담이라든가 심전도라든가 방광 스캔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융합해서 하고 있는데, 빅5나 대학병원일수록 복잡한 검사를 훨씬 더 많고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의료기사들이 하게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실무적으로도 대부분 의료기사들이 전담해서, 특히 안과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대부분 그런 기사분들이 이미 교육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 영역을 대통령령으로만 내리면 무조건 해결이 되고 그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급해서 여야에서 무슨 의미로 빨리 통과시키고 싶으신지 제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 반드시 직역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이거 거의 셨을지고 불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이거. 저는 진짜로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법이 남아 있으면 결국 의료기사들, 나머지 안경사들, 마지막에 있는 의사들까지 따로 법령 만들어서 업무 분담하자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거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반드시 반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급하게 직역까지 나눠 가면서 분할할 수 없는 업무까지, 이거를 문서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온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의료비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분열이 그리고 그 분란이 일어나는 즉시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기사 추가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없고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대로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2차병원급으로 빠질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력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답변드릴까요?

○이주영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의료현장에서 업무 영역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이주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정부도 이에 대비해서 의료행위의 법령해석부터 해석집 마련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고요.

이 법과는 달리 김윤 의원님께서 아마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명문화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명문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영역은 이렇게 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서 명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현장의 운영이나 적용 사례들을 좀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다른 직역들이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오셨다면서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주영 위원 다 반대하고 있는 상태로 오셨다고 하셨고 여기 2번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이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간호 업무랑 똑같은 뜻이고요, 현행 간호 업무랑 똑같은 뜻이고요. 넓게 해석하면 그냥 본인 일을 다 넘겨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라는 게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주영 위원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사업도 지금 진행되는 양태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례나 해석을 통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위임할 수 없도록 정의를 했고요.

○이주영 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유권해석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구체화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 내의 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이주영 위원 갈등은 그 분류할 수 없는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이것은……

○이주영 위원 만약에 의료기관 내를 뜻하는 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A라는 병원에서 의사가 지시를 하면 A의 부속병원들 나머지에도 파견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휴를 맺은 다른 협력병원에도 파견이 가능한 겁니다. 가정간호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도 다 파견이 가능한 거지요.

이것을 지금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라고 구체화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진료의 영역, 진료 위임의 영역 그리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위치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명시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법 조항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지금 제 머리에서 이것 보자마자 나오는 것만 해도 계속 달라지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판례로 해석을 하기에 몇 년 걸리실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판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도 명시화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른 직역들과 의견 조율이 안 됐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업무를 법령에서 세부 조항까지 다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률은 뭐냐 하면……

○이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해진 게 있지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등’이라는 게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나온 어휘가 아니라 여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미 있지 않습니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전부 들어와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업무까지 이것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료기사등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애초에 아직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업무의 영역이고 아직 명시화되지 않은 것을 ‘의료기사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법조문에 넣어 놓으시면 없는 이야기를 지금 법조문에 넣어 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들은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수정된……

○이주영 위원 이 말이 저는 더 황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구체적 한계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현장에서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저는 면피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듣고…… 이것을 이렇게 써 놓으면 결국은 '법조문에 따라 알아서 해석하십시오'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결국 혼란은 현장에서 생기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이주영 위원 이것 지금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공백 때문에 하시는 거라면서요. 이것 지금 의료공백 더 악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 들어가는 순간 의료기사들, 안경사 아니면 다른 전문 영역들 다 직역별로 파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분히 가능한 법령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의사진행을 조금…… 한 분한테 독점이 되니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선우 예, 이주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정부 입장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관련해서 저는 이 법안 자체가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는 정말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야 조율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 압니다. 민생현안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이 너무나 뻔한 일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각자의 상식과 경험에 빗대어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법은……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의견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차관님, 짧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차관 하기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서영석 위원 지난번 소위에서 어쨌든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합된 의견이 이거라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래서 다시 재수정안을 낸 것이, 이렇게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 수정된 의견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들에서 의견을 들었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 재수정안이요?

○서영석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 재수정안은 다시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주영 위원께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령과 현실의 괴리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저희가 그런 직역 간의 갈등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갈등을 수용하면서 제도가 안착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14조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논의했다고 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호조무사」 하는 위원 있음)

남았어요?

○김미애 위원 제명하고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소위원장 강선우 아, 다시 돌아가야 되지요.

아까 마지막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간호조무사 관련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이번의 추경호 안 6조 1항 제7호 규정인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상황이, 제가 어제 전체회의 때 의사진행발언도 했지만 가장 시급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료현장 의료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그 현장을 지키는 이른바 PA 간호사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 법제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그리고 지난 21대 때 이것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우선인지, 이 혼란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으로 신설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있던 의료법의 범위를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겨 두고,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걸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약속도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수차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 계속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부칙이든 대안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저희가 간호조무사 문제 관련해서는, 학력 차별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에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현행 체계에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그런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호 의원님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저희가 논의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황이어서, PA 중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논의를 사실 못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논의가 좀 불충분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 모여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부대의견에 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문구나 이런 부분은 정부도 고민하신 부분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남인순 위원** 그것을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담는 방법으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꼬는 터 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지금 말씀들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과정에서 앞 단의 간호인력체계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시면서 만약에 부대의견을 다신다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간호협회하고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단체들 의견을 모으고 또 간호체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진척을 시켜서 학력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제도개선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해당 조항은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에 손을 대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간호법 제정 목적과는 또 다른 전선을 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특성화고나 학원 등 각종 그런 갈등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 마련하는 데 동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부대의견에 동의하고요. 꼭 정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관계 단체, 이게 간호조무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양성체계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하고 꼭 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짧게 하실게요.

○ **김윤 위원** 간호조무사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다신다고 하니…… 앞서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범위 관련된 현장에서의 혼란 우려가 있고 저도 병원, 병원간호사협회 또 의료기사 단체들에서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직역 간 업무 갈등,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소위에 상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업무조정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이후에 직역 간의 업무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에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위원장 강선우** 안상훈 위원님.

○ **안상훈 위원** 저도 차관님 지금 설명해 주신 부대의견과 비슷한 생각 갖고 있었는데 말씀 동의하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부대의견 달고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지금 관련 단체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력에 대해서 지금처럼 제한을 실제로 작동하게 두는 것보다는 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역사를 보니까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된 학력, 교육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중진국 시절일 때 생겼던 거고 지금은 우리 일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조금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런 정신을 담아서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 **이주영 위원** 업무 범위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제가 그것을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똑같은 포지션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서 발생한 지금의 의료 공백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호사 영역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PA로 대체되는 곳은 사실은 1차·2차병원이 아닙니다. 3차병원 이상 대학병원 특히 빅5, 아주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력 구성은 언젠가 의대생들이 다시 수련을 받고 싶어지는 날이 와도 전공의를 수련할 환경이 안 되고 그때 이미 교수가 없을 거고……

전담간호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전공의 없으면 심장수술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사라지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 수련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5년 뒤에 전문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10년 후에 좋은 기술을 가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소아 영역에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압니다.

제가 그냥 일반 진료 영역 침범받는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당당하게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수련시스템 무너질 것이고 다음 세대 전문의들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인력 구성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빅5부터 타격 받을 겁니다. 대학병원 다 무너집니다. 2월 1일부터 제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시간 순서대로

맞았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젊은 의사들 전문의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안 하고 싶어 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 구성까지 바뀌고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의가 없이 지금 2차병원처럼 소수의 의사와 다수의 전담간호사들이 쉬운 의료는 많이 하겠지만 중증의 의료, 아주 심오한 의료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러분들도 3년만 뒤를 생각해 주십시오. 10년까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저도 병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에게 법적 허용을 통해서 과도하게 업무가 전가되거나 환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간호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직종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병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28조, 36조 관련해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이 부분 어차피 종합계획에 계획 세우기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확인을 좀 해 보고 싶고요.

또 교육 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간호사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해 간호의 질 향상을 규정하는 교육훈련 중인 간호사를 대신해서 근무할 수 있는 추가 인력 상시 배치해야 한다 이 부분도 노력 조항으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이수진 위원** 노력으로 끝나실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손놓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될지 아마 이 자리에서도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 전공의가 옆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의 의사가 저에게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차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내년도 입학정원 아닙니까? 1500명 의대정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누누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의대 졸업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

○**소위원장 강선우** 간호법……

○**이수진 위원** 잠시만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간호법안에 관련된……

○이수진 위원 마무리 할게요.

지역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트랙을 좀 달리해 가지고 마련을 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책임 있게 대책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마지막으로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 제명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제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김미애 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하고 간호사 등……

○소위원장 강선우 잠시만요.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이고요.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이고요.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입니다.

○김미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간호법으로 할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할지,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에서 일 사(事) 자를 넣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논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 법 제명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게 국민 앞에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간호법’이 다수가 발의한 법 제명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의결……

○서영석 위원 의결 전에 부칙에 보니까 1조, 아까 우리가 14조 3항을 2항으로 바꿔서 그것을 2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소위원장 강선우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리고 말씀하신 조문이요, ‘다만 3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부분. 이렇게 두면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3년으로 하기가 좀 그러면 대령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서영석 위원 33페이지, 제1조(시행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33쪽의 시행일 단서 규정이요. ‘3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하면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후에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 사이에 준비가 되면 시행하실 의도시라면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도록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좋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리를 해서 읽어 주세요, 다만부터.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한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그런 취지로 자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간호법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영 위원** 저는 이의 있는 것으로 기록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선우 김미애 김 윤 남인순 백혜련 서명옥 서영석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전진숙 최보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연광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